

여는 별표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징수한다.
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]
실계심의수수료 산출기준(조례 제12조제1항 관련)

구 분		수수료(1건당)	비 고	
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19조제2항제1호의 심의사항		800,000원	8인×2일×50,000원	
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9조제7호의 심의사항	입찰안내서 심의	800,000원	8인×2일×50,000원	
	일괄입찰공사 기본설계 심의	2개 업체 응찰시	3,000,000원	30인×2일×50,000원
		3개 업체부터 4개 업체 응찰시	4,500,000원	30인×3일×50,000원
		5개 업체부터 6개 업체 응찰시	6,000,000원	30인×4일×50,000원
		7개 이상 업체 응찰시	7,500,000원	30인×5일×50,000원
기타 심의사항	800,000원	8인×2일×50,000원		
기타 심의사항		800,000원	8인×2일×50,000원	

서울특별시성수대교사고에따른사상자 보상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

서울특별시성수대교사고에따른사상자보상금지급조례는 이를 폐지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조례중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조례중 다음과 개정한다.

제27조제1항제2호중 “서울특별시건축조례 제54조제2호 규정에 의한 일반주거지역의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기준면적 이상인 자”를 “서울특별시건축조례 제52조제1호 규정의 규모 이상인 자”로 하고, 동조제3항중 “제1항제1호가 목 내지 다목의 규정중 취득의 범위는 공동주택(그 지분의 토지를 포함한다)을 취득하는 경우와”를 “제1항제1호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중 취득의 범위는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분양대상이 되는 공동주택 취득의 범위에 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전에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하여 구분소유 등기를 필한 주택은 제27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가구별 각각 1인의 분양대상자로 한다.

서울특별시공영차고지설치및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

의안 번호 548

2000년 5월 일
교 통 위 원 회

1. 심사경과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0년 2월 29일, 서울특별시장 제출
 - 나. 회부일자 : 2000년 3월 3일
 - 다. 상정일자
 - 제118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통위원회(2000. 3. 7)
 - 상정,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, 질의·답변, 심사소위 구성
 - 제119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5차